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20호 2021. 5. 28(금)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1-1140호 도로지정공고 ----- 1
- 남원시 공고 제2021-1149호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 2021 -1140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1-5	남원시 쌍교동 126-2	윤*영 윤*언	2021-건축과- 신축허가-64	2	1	2	남원시 쌍교동 126-2	2	윤*영 윤*언

남원시공고 제2021-1149호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1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하위 위원회인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규정함 (안 제11조)
-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제21조)
- 라.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22조~제30조)
 - 안전점검대상 시설명 변경에 대한 사항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변경) (안제22조)

마. 공통사항을 규정함 (안 제30조 ~ 제33조)

바.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폐지 등을 규정함 (안 부칙)

3. 입법예고기간 : 2021. 5. 31. ~ 2021. 6. 21.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안전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70 / 남원시 시청로 60, 2층 안전재난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iopqueen@korea.kr), fax(063-620-6706)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담당 (☎063-620-6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임 :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재난과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1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하위 위원회인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규정함 (안 제11조)
-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제21조)
- 라.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22조~제30조)
 - 안전점검대상 시설명 변경에 대한 사항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변경) (안제22조)
- 마. 공통사항을 규정함 (안 제30조~제33조)
 - 바.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폐지 등을 규정함 (안 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31. ~ 2021. 6. 20.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 의견 반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75조에 따라 각각 설치하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남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난”,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의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2장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재난관리책임기관)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

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원경찰서장
2.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장
3. 육군 제7733부대 3대대장
4. 남원소방서장
5.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담당 국장
6.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2.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남원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

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사항을 조율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남원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각 1명씩 당해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 참석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 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 ②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담당국장이 된다.
-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예산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남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4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의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의 협의

제16조(구성 및 임기)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 및 재난업무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 기관·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9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20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민방위담당이 된다.

제4장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제22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 전문가를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6조(회의 등)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개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① 시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생략하고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회의록의 비치)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붙임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3. 재난취약 지역·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
4.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3호 관련)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1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